

# 정보공개제도 세칙

제정 2006. 11. 1  
개정 2007. 10. 8  
개정 2009. 12. 23  
개정 2010. 10. 29  
전문개정 2014. 09. 25  
전문개정 2019. 04. 04  
개정 2021. 06. 24  
개정 2023. 03. 2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진흥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진흥원이 이 세칙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진흥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진흥원의 의무

**제5조(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세칙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제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를 총괄하기 위해 경영기획본부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 본사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세부업무별 정보공개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소관부서를 정하고 부서 내 직원 1인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책임자 및 정보공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정성 여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성 등 검토
2. 소관업무에 대한 사전공표대상 목록별 공개시기에 따른 정기적인 공개
3.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목록의 작성 및 공개
4. 소관업무에 대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변경·보완 및 공개

**제6조(사전정보의 공표 등)**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가. 중장기 발전계획 및 경영전략  
나. 전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 및 연도별 주요 결산실적 등 재무관련 정보
4. 주요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5.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간행물 및 보고서
6.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진흥원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진흥원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8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진흥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사업수행사항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련되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진흥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5. 감사·검사·입찰계약·인사관리·정보시스템·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진흥원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진흥원 직원의 성명·직위

7.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책임자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진흥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1]과 같이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진흥원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진흥원 민원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 부존재로 인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형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 형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흥원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 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실·본부·단 및 각 사업소가 된다.

⑥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진흥원은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별지 제4호>의 형식에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진흥원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심의회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④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 공석 시에는 정보공개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 위조·변조 등의 거짓 정보공개, 정보 은닉,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 정보공개 관련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내부 직원의 경우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⑧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진흥원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 형식에 따라 공개의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진흥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

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공표부서 등)** ①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 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른다.

**제18조(정보공개처리대장)**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편람 등의 비치)** 정보공개책임자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공개편람, 청구서 서식, 제6조의 행정정보, 제7조의 정보목록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시·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수수료 등)** ①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표2]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2.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3.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된 홍보자료 등의 제공과 같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50%로, 제1호 및 제4호의 감면비율은 100%로 정하고, 동 비율은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은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잡수입 처리한다.

##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 제2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진흥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에 의하여 진흥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접수한 이의신청서를 즉시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별지 제8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심의회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 ⑤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9호>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10. 8)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12. 23)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10. 29)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9. 25)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4. 4)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공 통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및 비공개 사유 설명	근거
민원 사무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관리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예산 집행 및 지출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업무와 관련된 비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li> <li>-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li> <li>-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회의, 협의, 의사록 등 의견교환 기록)</li> <li>-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li> <li>※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li> <li>-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li> <li>-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li> </ul> </li> <li>○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오해 가능한 정보(초안, 검토서,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등)</li> <li>○ 정책의 입안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li> <li>○ 진흥원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li> <li>○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경영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이사회 운영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및 임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임원선임 관련 내용 및 추천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선임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출자기관 관련 업무	출자회사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자체연구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 및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간간부회의 등 경영관련 회의 주관	주간·월간 내부 검토·협약 결정 등의 간부회의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 ESG성과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관 경영실적평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보고서(일부) 및 지표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사업수행사항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 및 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보고서(일부) 및 지표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사업수행사항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내부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회의(심의회)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명단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사회적가치에 관한 사항	협력·입주기업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기업의 정보가 개인의 신상, 재산 등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일자리 추진단 및 지역상생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회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 명단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

동반성장 추진계획 수립·실행점검 및 정부평가 대응	협력·입주기업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기업의 정보가 개인의 신상, 재산 등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	------------	----------------------------	--

## □ 데이터기반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및 유지보수(아웃소싱) 관리에 관한 사항	네트워크 IP내역, 서버 IP주소 및 사용 Port 등 정보보호현황,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정보보호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정보보호 관련 정부평가 및 대외기관 대응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 현황 포함),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해설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정보보호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사이버안전센터 및 민간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위탁 관리(관제 및 취약점진단 등)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장비·소프트웨어 수급·관리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공개될 경우 입찰 계약 업무 등 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초래 할 수 있음

## □ 방송미디어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계획·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계획 및 연구 내용 이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정책 지원 등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방송미디어 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신규사업 발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방송·미 디어 분야 개인·법인·단체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계획 및 연구 내용 이 공개될 경우,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 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방송미디어 분야 법, 제도, 정책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연구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계획 및 연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방송미디어 분야 포럼, 연구반 등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방송미디어 분야 저널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	저널발급 관련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입찰참가신청 등 제출 자료 중, 특정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 방송콘텐츠진흥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해외한국어방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지원프로그램의 유통 및 배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입찰참가신청 등 제출 자료 중, 특정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방송대상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국내외 방송콘텐츠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방송콘텐츠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 디지털미디어진흥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디지털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및 지원기업의 사업 비밀 등을 포함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평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등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 전국 디지털미디어센터 시설장 비교육 이용자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연락처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비대면스타트업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및 지원기업의 사업 비밀 등을 포함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평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음

## □ 기금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금 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사항	기금사업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책입안 과정에서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분담금 징수제도 관련 조사·연구 관련 정보		
	기금재정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정보		
	기금관련 평가(부담금·준치 등) 대응 관련 정보		
자산운용 위험관리 및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명단, 안전 세부내용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
자산운용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명단, 안전 세부내용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
투자유니버스 구성 및 관리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자산운용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기금사업 관련 외부자문 계획 및 결과(의견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6호, 7호	업무 기획·검토를 위해 수립한 정보·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

## □ 기금정책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단년도,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원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사결정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기정통부·기재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진흥원이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정보)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지원	위원 개인정보, 심의회 회의내용 등 세부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개인의 인적 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원	기금사업 시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기정통부·기재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진흥원이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정보)
기금사업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	기금사업 시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기정통부·기재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진흥원이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정보)
사업조정, 수요조사, 신규 발굴 등 재정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조정, 수요조사, 신규 발굴, 재정사업계획 수립 지원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 혼란 및 연구·개발 등 과정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기금사업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사업비 지급, 집행단위 및 세부사업 교부관리	기금 관련 협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재정집행 및 수행상황 점검	실태조사 사업 당해연도 사업 추진 세부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사업비 정산관리 및 환수	사업비 교부 신청 금액, 계좌번호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입찰·계약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입찰계약 및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ICT기금사업 교육 및 설명회	교육 관련 내용 및 교육 참석자 핸드폰번호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기금성과평가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금 사업 평가 대응	기금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 결과평가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평가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일자리 성과 정보 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 일부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 최종평가 수행	사업평가 관련한 결과물 및 시험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외부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

## □ 기금운용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기금 여유자금 운용 및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연간 자산운용계획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개인정보, 위원회의 내용 등 세부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개인의 인적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대응	평가 대응을 위한 내부 검토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금 운용실적 및 교부계획 보고	기금 여유자금 운용 및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기금 징수 및 결산·회계 관리	ICT기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예수금 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예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기금의 물품·채권 및 재산 관리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융자대여금 및 상환계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방송인프라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빛마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내역, 중장기 사업 전략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운영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및 보고 안건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빛마루 방송시설(스튜디오, 중계차, 편집실, 녹음실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방송시설 세부대관내용, 대관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빛마루 부대시설(세미나실, 회의실, 교육실 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세부대관내용, 대관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빛마루 업무·상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업무시설 계약내용, 계약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업체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국유재산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수입·지출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 빛마루사업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건축·영선, 기계, 전기, 방재·방호 등)에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	검사·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품의 검사·입찰계약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빛마루 CCTV에 관한 사항	개인 및 개인차량 (번호판)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

## □ 검사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검사수수료 수입·지출 등의 경영정보, 제도개선 방법 및 일정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또는 특정 법인의 이익만을 실현) 진흥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무선국 검사업무 관련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및 국내·외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무선국검사 연간 계획수립·조정·시행·관리 및 인력 수급계획 등에 관한 사항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제외
무선국 허가·검사관련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무선국 허가·검사 분야 전파 진흥 기본계획 수립 지원	경매 및 특정산업 활성화 정보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8호	주파수경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경쟁에 지장이 초래되고, 특정산업 활성화 정보는 추가정보·주식매매 등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 전파기술연구센터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국 검사·측정 기술개발·연구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개발연구 및 고도화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당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신통신방식에 대한 측정기술 개발·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발연구 및 보급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당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검사용 측정장비·부대품·검사 차량의 수급 및 유지보수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 제출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술지원 및 자문자료는 업체가 제출한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녹색인증 평가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녹색인증 평가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및 평가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녹색인증 평가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평가결과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전자파 측정 계획수립·조정·시행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한 타 기관(정부, 유관기관, 업체)의 시험측정 결과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타 기관의 시험측정 결과물은 타 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타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전자파 관련 정부협약사업 수행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전자파 관련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업무 검토, 기획에 관한 기록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이해증진 및 갈등조정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위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전자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신청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신청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 □ 디지털통신융합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디지털융합(전파·통신)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전파분야 진흥계획(전파진흥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
디지털융합 신규사업·과제 발굴·기획 및 정부사업화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및 진흥원의 경영상·영업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전파분야 법·제도·정책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기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 자료로써 진흥원의 외부 공표 권리가 없으며,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디지털융합 국내외 기관(국제기구, 학회, 공공기관 등) 간 연구 협력 및 동향 조사·분석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전파통신진흥을 위한 홍보, 대국민 소통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전파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운영 및 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정보 컨설팅,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동 통 신 사 업 자 (SKT,KT,LGU+) 세부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본부 내 사업전략 및 조직·인력 운영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본부·팀 구성원에 관한 개인정보, 진흥원의 경영상·영업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본부 내 공통업무의 주관 및 다른 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①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②본부·팀 구성원에 관한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한 정보 및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디지털통신융합사업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디지털융합(통신)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사업화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미성숙한 정보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의 입안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 공표 할수 없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통신분야 법·제도·정책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지원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개될 경우 법적인 문제 발생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디지털플랫폼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미성숙한 정보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의 입안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 공표 할수 없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통신이용자보호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미성숙한 정보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의 입안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 공표 할수 없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방송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재난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방송사별 지원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개될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가 발생 가능
재난방송 제도·정책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송사별 시스템 및 장비 현황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재난방송 기술 관련 동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미성숙한 정보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의 입안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공표 할수 없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	--

## □ 이음5G사업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이음 5G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지원	이음5G 활성화 계획 및 중장기 전략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활성화 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이음 5G 주파수 공급·이용·관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이음5G 행정 컨설팅 등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7호	기술지원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또한 지원 대상(법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음 5G 망 구축 및 운용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이음5G 기술 컨설팅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7호	기술지원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또한 지원 대상(법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음 5G 활성화 관련 협의체 운영, 국내외 단체 협력 사항	협의체 운영 및 참여인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인력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음 5G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 제·개정 지원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및 연구반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	연구반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반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R&D 과제 사업 기획 및 제도 관련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R&D 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관리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 제7호	과제 수행 중 취득한 지식재산권 및 특허 등의 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 및 법인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R&D 과제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 운영 및 인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	연구원 인적사항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시행 및 평가위원회 운영	할당조건 이행점검 시행 및 결과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이행점검 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또한 점검 대상(법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평가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	평가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평가 관련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및 위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	연구반원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측정 프로그램 고도화	이행점검 측정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7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또한 점검 대상(법인)의 영업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 전파자원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전파자원 수요 발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 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 재개발 및 공동사용 등 정비 기획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 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분야 연간 사업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 단,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한 발표 확정된 중장기 전략은 공개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동종의 의사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 재개발 관련 법, 제도, 정책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 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관리 분야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 재개발 등 정비대역 발굴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 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동종의 의사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파수 이용현황 DB 및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 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 및 예보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 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효율적 주파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 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효율화 계획 수립	주파수 중장기 계획 (※ 단,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한 발표 내용은 공개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책의 입안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주파수 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자문회의, 법률검토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정책결정의 지장초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련되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관리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협약체결 및 협약사업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 관한 사항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책의 입안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일반용역 및 연구과제 계약에 관한 사항	일반용역 및 연구과제 업체선정과 입찰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전파자원정비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계획, 무선국 및 시설자 세부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보상대상 시설 분석 및 채널배치 세부계획 수립	보상대상의 범위, 무선설비 등 시설자 정보, 예상 소요예산 분석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의 법정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회 및 협의회 등 회의자료, 무선국의 손실보상금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회 등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정성, 독립성, 사업목적 달성 등 운영에 지장</li> <li>○ 무선국 내 무선설비 정보 및 손실보상금 등은 시설자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li> </ul>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대상 DB 구축, 분석 및 관리	무선국 내 무선설비의 세부정보, 주파수 관련 비교분석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 보상금 산정, 이의신청 등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각종 민원, 감사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 공개될 경우 시설자 및 담당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비면허무선기기의 지원 내역, 센터로 접수된 세부 내용, 민원인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개될 경우 시설자 및 담당자,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공개 가능한 통계 관련 사항은 제외)
비면허무선기기 지원유형별 세부절차 마련 및 실행	자문회의, 법률검토 등 각종 회의자료 및 참여자 인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동사용, 비면허주파수 정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비면허 정비 후보 대역 및 결정되지 않은 지원방안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정책결정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비면허 국내외 동향조사, 표준화 활동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유료 해외동향 정보, 표준화가 진행중인 사항, 제도개선 계획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공공주파수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보고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	○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 자격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ICT자격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및 개편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ICT자격 직무분석 및 출제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시험 관련 정보이며, 시험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검정관리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검정관리운영규정 제·개정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 관련 정보이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ICT자격 종목 개편(신설, 통·폐합)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및 개편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검정업무 심사분석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검정업무 심사분석 및 직무교육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시험 관련 정보이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기술자격제도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참석 명단, 회의 내용 결과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위원회 참석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회의 내용 결과 등은 공개할 경우 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검정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ICT자격검정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ICT자격시험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격취득교육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중 자격검정, 교육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자격검정 및 취득교육 지침 및 요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ICT자격검정 지침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ICT자격검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험문항 개발,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ICT자격검정 시행에 사용하는 시험문항(필기·실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필기·실기시험 문제 및 상시, 출장 검정에 사용하는 시험문제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문제은행 입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ICT자격검정 시행에 사용하는 시험문항(필기·실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실기시험 문제 및 상시, 출장검정에 사용하는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자격검정 홈페이지 서비스 및 자격검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중 자격검정, 교육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CBT시스템 및 자격취득교육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중 자격검정, 교육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자격자 관리 및 전문가 인력 풀 관리에 관한 사항	자격자·시험위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시험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검정업무 통계·실적 및 세입 처리에 관한 사항	검정업무 통계·실적 및 세입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검정업무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중 자격검정, 교육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검정기자재 및 통신보안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통신보안교육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자격자 행정처분 및 자격조회에 관한 사항	자격 취소, 말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지방본부(지사) 검정운영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자격취득 교육 시행	자격검정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통신보안교육 시행	교육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 □ 지방본부(지사) 감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국검사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분석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무선국검사(유선방송포함) 및 전자파 강도측정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 □ 감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감사의 계획수립과 시행	내부 감사계획, 대외 평가관련 불시 조사계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위 및 사고의 조사처리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클린센터 등의 신고 및 처리서류, 각종 사고 처리 관련 문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민원(제안 포함)처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민원, 감사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이 경우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권익위 청렴노력도(시책) 측정에 관한 사항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항목별 점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측정 결과(점수)"를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표2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음

## □ 인사총무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인사·현원 관리)	임직원 재산등록사항 등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금융실명법 제4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보수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함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 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결정통지, 건강검진,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비위·진정 등에 대한 조사 등 인사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직원 채용 또는 자격시험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직원 채용·임용·승진에 관한 사항	채용, 임용, 평가, 교육, 훈련, 급여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직원 상훈·징계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역량평가 및 개인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회의(심의회)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명단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
내부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교육훈련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발명진흥법 제19조)
소송, 송사 등 개별 근로 관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직원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관련 정보</li> <li>○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li> </ul>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li> <li>○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ul>



인장의 조제·관리 및 제 증명서 업무총괄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개인 정보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의 우려
정보공개 관련 이송·조치·결정·통지 등에 관한 사항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청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법'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원칙으로 함
단체교섭·협약, 노사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노조 관련 업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음
문서의 분류·수발·편찬·통제·보존·보안·관리 및 기록물관리	비밀취급자 명단, 보안업무 관련 비밀 문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부동산(사옥 및 부대시설) 등 자산의 취득·처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진흥원 사옥의 구조 및 설계도, 경비 위탁에 관한 사항 ○ 진흥원의 통제구역, 제한구역 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사옥 임대차 계약·해지·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수집된 부동산 관련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개발계획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국외행사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활동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안전보건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운용·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관리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안전보건경영 운영·관리 내용은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회 구성·운영	위원회·협의체 회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위원회·협의체 내용은 기관과 수급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과 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사옥·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사옥·시설 운영·관리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옥·시설 운영·관리 내용은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재난안전훈련(직장민방위대, 을지태극연습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 대비 계획, 훈련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전시 계획, 훈련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안전보건관련 정부평가 대응	정부평가 관련 안전보건 경영 운영·관리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안전보건경영 운영·관리 내용은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	-------------------	--

## □ 재무회계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수입·지출 및 재무분석과 자금운용 관리 결산, 세무 및 투자유가증권(출자금) 처분 등 관리 회계 출납처리	금융기관별 예금 관련 현황, 보유출자금 관련 경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예금관련현황, 보유 출자금 관련 경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구매, 용역, 공사, 부동산의 취득·처분 시 등 각종 계약체결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음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음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위원 명단,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협약사업 평가 및 자체연구과제 평가·정산에 관한 사항	협약사업자 정보, 평가결과, 정산 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2019. 4. 4. 개정> (제20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ul> </li> </ul>
마이크로 필 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회: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ul> </li>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진흥원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 열람·시청 [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 ] 기타( )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수수료	[ ] 감면 대상임 [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 열람·시청 [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 ] 기타( )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직원 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사총무팀(061-350-13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원	원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계(①+②-③) 원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mm×210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별지 제6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질의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등 청구인의 요구 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	--

이의신청 사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귀하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